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의 안 번 호	901

제안년월일 : 2012년 7월 5일
발 의 자 :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우리시의회에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의혹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 증인·참고인의 불분명한 증언·진술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북한산 콘도개발 부지에 위치했던 구 그린파크호텔 입구에 위치했던 환구단 정문이 환구단 시민광장으로의 이전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여부,

나. 사업대상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콘도개발 사업계획 승인 전 협의를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건축허가 전에 협의를 완료한 점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 및 행정지원 특혜 의혹,

다. 북한산 콘도개발 사업시행자인 (주)파인트리의 사업제안 이전인 2006년 12. 4일 당시 토지주이자 (구)그린파크 호텔 경영자의 제안과 강북구청장의 요청으로 우이 유원지 재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객관적인 도시관리계획 현황 자료도 확인할 근거 없이 '유원지 시설의 면적 등이 현재의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제안을 다시 할 수 있게 한 점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반려 처분한 정황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의혹,

라. 사업부지인 우이동 산 14-3 및 산 22-1 번지 토지는 인허가 당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서울시·강북구 및 산림청은 이에 대해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산지관리법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콘도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하여 관련 의혹를 명백히 밝혀 관계자 문책은 물론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이 송 처 : 감사원
다. 기　　타 : 없음

4. 첨　　부 :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1부.

서울특별시 북한산 콘도개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지난 13개월 여 기간 동안 우리시의회에서 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의혹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 증인·참고인의 불분명한 증언·진술로 명백히 밝히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필요고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감사해줄 것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산 콘도개발 부지에 위치했던 구 그린파크호텔 입구에 위치했던 환구단 정문의 환구단 시민광장으로의 이전의혹과 관련하여 문화재청까지 나서서 문화재 자료인 환구단 정문 이전을 무리하게 독촉한 정황에 대하여 그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둘째, 사업대상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콘도개발 사업계획 승인 전 협의를 완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건축허가 전에 협의를 완료한 점에 대하여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셋째, 북한산 콘도개발 사업시행자인 (주)파인트리의 사업제안 이전인 2006년 12. 4일 당시 토지주이자 (구)그린파크 호텔 경영자의 제안과 강북구청장의 요청으로 우이 유원지 재정비 목적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요청하였으나 '유원지 시설의 면적 등이 현재

의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행정사무조사 확인 결과 상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도시관리계획 현황 자료도 확인할 근거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제안을 다시 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반려처분한 정황이라고 결론내릴 수 밖에 없었고, 그 뿐 아니라 서울시 감사관실 자체 감사에서도 명백히 그 잘잘못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요구하며,

끝으로 사업부지인 우이동 산 14-3 및 산 22-1 번지 토지는 인허가 당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이를 준보전산지로 변경하지 않고서는 콘도 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강북구 및 산림청은 이에 대해 공익용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산지관리법을 중대하게 위배하여 콘도개발 사업을 가능하게 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분명히 밝혀 서울시 및 산림청 관계자 문책은 물론 이후 같은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2년 7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